

영등포구의회  
제181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 
설치·운영 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4. 4. 11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 조례안』 檢 討 報 告

## 1. 경 과

의안 제292호로 2014년 4월 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 
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·지휘하기 위하여  
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
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(안 제4조)
- 나.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다. 현장지휘관 지정(안 제7조)
- 라.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(안 제8조 ~ 제21조)

마.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(안 제22조)

바. 권한의 위임(안 제24조)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6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

다. 타구제정 : 서울 중구

#### 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라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·지휘하기 위하여 설치·운영 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제출된 조례안 임.

○ 주요내용을 보면

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의 목적, 대응단계에 관한 사항과 통합지휘소의 설치·운영과 구성 및 임무를 규정하고, 재난현장에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재난현장 출동지원 및 재난현장 조치,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,

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및 통합지휘소 철수에 관한 사항과 권한의 위임을 규정함.

- 그 동안 재난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휘체계의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재난 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·지휘 및 조정을 위한 통합지휘소를 설치·운영하도록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이 시행됨.(’13.8.6 개정, ’14.2.7 시행)
- 이는 상위법 개정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서울시로부터 시달되었고, 이에 따라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합지휘소를 설치·운영하려는 조례안으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## 관 련 법 령

### ■ 『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』

제16조(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)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는 시·도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"시·도대책본부"라 한다)를 둘 수 있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군·구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"시·군·구대책본부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다만,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제14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대책본부의 대응체계가 구성·운영되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도대책본부나 시·군·구대책본부(이하 "지역대책본부"라 한다)를 두어야 한다. <개정 2013.8.6>

②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(이하 "지역대책본부장"이라 한다)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되며,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 <개정 2013.8.6>

③ 시·군·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·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(이하 "통합지휘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·군·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3.8.6>

④ 통합지휘소의 장은 관할 시·군·구의 부단체장이 되며, 통합지휘소에는 현장지휘관을 두고, 현장지휘관은 해당 시·군·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통합지휘소의 장이 임명한다. <신설 2013.8.6>

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3.8.6>